심사대상 : 작업장

2022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결과보고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기획재정부

심사위원

심사위원 성명	서명	안전 역량	안전수준				안전 성과
			작업장	건설현장	시설물	연구시설	
유병태		○	○				○
홍성훈		○	○				○

본 심사의 주된 사항은 개별 소관법령에 따라 실시한 안전평가 결과와 각 기관에서 제출한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근거로 진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Ⅰ 심사 결과 : 종합 3등급

구 분			등급
종합등급 (1,000점)			**3**
1 **안전역량** (300점)			**4**
2 **안전수준** (400점)			**3**
	분야별 가중치	작업장	100%
		건설현장	비해당
		시설물	비해당
		연구시설	비해당
3 **안전성과** (300점)			**2**

범 주	심사 분야	심 사 지 표	배점	등급
안전역량 [300점]	1 **안전역량 배점 및 등급**		**300**	**4**
	1. 체계 역량	**소 계**	170	D
		① 안전보건경영 리더십	40	E
		② 안전보건경영체제 구축 및 역량	40	D
		③ 안전보건경영 투자	30	D
		④ 안전관리규정 및 절차·지침	30	C
		⑤ 안전관리 목표 및 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	30	D
	2. 관리 역량	**소 계**	130	C
		① 위험성평가 실시 체계	40	C
		② 근로자 건강 유지·증진 활동 체계	30	D
		③ 안전보건교육·안전인식·활동참여	30	C
		④ 재해조사 및 비상상황 대비·대응 능력	30	D
안전수준 [400점] ※분야별 가중치 적용 후 환산	2 **안전수준 배점 및 등급**(분야별 가중치 적용)		**400**	**3**
	1. 작 업 장	**【작업장 안전관리】**	400	C
		① 작업장 기본 안전보건관리 수준	40	C
		② 기계·전기 설비 위험방지 및 추락예방 조치	120	C
		③ 화재 및 화학물질사고 예방활동 수준	80	D
		④ 위험 작업 및 상황 안전관리	60	C
		⑤ 수급업체 안전보건 관리	100	D

범 주	심사 분야	심 사 지 표	배점	등급
안전수준 [400점] ※분야별 가중치 적용 후 환산	2. 건설현장	**【건설현장 안전관리】**	400	비해당
		① 발주현장의 안전보건 체계	25	비해당
		② 공사 착공 전 안전보건활동	55	비해당
		③ 공사 착공 후 안전보건활동	85	비해당
		④ 발주현장의 안전보건 여건	35	비해당
		⑤ 건설안전 환경조성	85	비해당
		⑥ 안전시공 작동수준	115	비해당
	3. 시설물	**【시설물 안전관리】**	400	비해당
		① 시설물 관리계획 수립 수준	40	비해당
		② 시설물 안전을 위한 조직의 노력	30	비해당
		③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50	비해당
		④ 시설물 유지관리 체계 구축 수준	100	비해당
		⑤ 시설물 안전성능 수준	30	비해당
		⑥ 시설물 보수·보강 및 노후화 대비	50	비해당
		⑦ 시설물 안전 전문성 강화 노력 수준	50	비해당
		⑧ 대국민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관리 수준	50	비해당
	4. 연구시설	**【연구시설 안전관리】**	400	비해당
		① 연구실 일반 안전 유지·관리 수준	50	비해당
		② 연구실 기계 안전 유지·관리 수준	50	비해당
		③ 연구실 전기 안전 유지·관리 수준	50	비해당
		④ 연구실 화공 안전 유지·관리 수준	50	비해당
		⑤ 연구실 소방 안전 유지·관리 수준	50	비해당
		⑥ 연구실 가스 안전 유지·관리 수준	50	비해당
		⑦ 연구실 위생 안전 유지·관리 수준	50	비해당
		⑧ 연구실 생물 안전 유지·관리 수준	50	비해당
안전성과 [300점]	**3 안전성과 배점 및 등급**		**300**	**2**
	공통	① 안전관리등급 심사결과 개선 필요사항 이행수준	60	B
		② 안전경영책임 활동 및 성과(안전경영책임보고서)	120	C
		③ 안전문화 확산	20	C
		④ 사고사망 감소 성과 및 노력도	100	B

※ 등급부여 기준(100점 기준 환산점수 적용)

구 분	총 점	1등급(A)	2등급(B)	3등급(C)	4등급(D)	5등급(E)
배 점	100점	90점 이상	80점 이상	70점 이상	60점 이상	60점 미만

Ⅱ 총 평

범주	총 평
안전 역량	기관의 안전역량은 체계역량과 관리역량 전반에 걸쳐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안전역량 지표의 경우, 전년대비 평가등급이 1단계 상승(5→4)하였으나, 기관차원의 관심과 노력이 요구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안전보건경영 리더십이 전년과 동일하게 낮게 평가되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을 기반으로 기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재해 및 사고를 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세칙을 마련하고 위험성평가의 절차서 및 지침서를 통해 위험성평가를 추진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위험성평가의 경우 기관뿐만 아니라 수급업체의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해당사항이 안전교육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보건관리활동 시 일부단계(문제점 도출·개선 → 환류)가 미흡하여 해당 부분에도 개선이 요구된다.
안전 수준	**【작업장 안전관리】** 기관의 안전수준은 전년대비 평가등급 개선(4→3) 되었으나, 전반적으로 보통으로 평가되었다. 세부지표 중 수급업체 안전보건 관리의 경우 기관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지침서에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매월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및 합동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였고 안전보건 개선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건의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정하게 운영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급사업 계획 단계에서 해당 도급의 위험성 및 안전대책을 검토하는 절차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며 특히, 작업 전 위험성평가 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파악이 미흡하고 관리적인 안전조치만 수행하여 설비 및 장비의 위험에 대한 조치가 확인되지 않는 사항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기계·전기 설비 위험방지 및 추락예방 조치를 위한 일일점검 일지가 다소 형식적으로 작성되어 해당부분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었다.
안전 성과	기관의 안전성과는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안전관리등급 심사결과 개선권고 과제 중 22건의 과제이행이 확인되었다. 전체적으로 기관은 전년도 평가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 후, 지적 사항에 대한 이행계획 수립을 진행하였다. 안전보건팀 주관하에 전사 대책회의를 진행하였으며, 경영자 검토를 통해 이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 관리하였다. 그

범주	총 평
	럼에 불구하고 사고예방을 위한 기관차원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 연간 수행하였던 여러 안전문화 프로그램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Ⅲ 범주별 개선 필요사항

○ 안전역량

개선 필요사항
1. 안전전담인력에 대한 전문성을 유지·강화할 수 있도록 기관장의 지속적인 관심 필요 2. 안전보건팀을 기관장 직속으로 개편 필요 3. KOSHA-MS 사후심사 결과에 따른 관찰 및 권고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 및 수정·보완 필요 4. 안전보건 예산의 부진사업에 대한 계획 및 추가방안 수립 등 모니터링 체계 마련 및 운영 필요 5. 안전보건관리세칙에 안전보건교육 기록에 관한 사항 등 관련법령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추가로 반영 필요 6. 절차나 지침 등에 모든 사업형태(사무 포함), 시설, 작업특성에 따른 안전작업 절차 및 수칙 등을 포함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작업 절차 및 수칙 등에 작업장 출입 전 안전조치 점검 등의 내용 반영 및 확대 필요 7. 수급업체 및 현장 근로자 안전보건이행을 위한 세칙, 지침, 법규 등의 안전보건 관련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해당 근로자나 실행부서를 대상으로 교육 실시 필요 8. 안전보건예산의 점검 결과 미진한 사업 혹은 지연 사업에 대한 추적관리 체계가 보완 필요 9. 기관뿐만 아니라 수급업체의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해당사항이 안전교육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 필요 10. 보건관리활동 시 일부단계(문제점 도출·개선 → 환류)가 미흡하여 해당 부분에 대한 개선 필요 11. 근로자의 참여가 저조한 근원적인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내부적 검토 및 개선 필요 12. 안전보건교육의 누락 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적정한 계획 수립 필요 13.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목표, 위험성평가 등 안전보건활동에 전 근로자가 참여토록 관리방안에 대한 개선 필요 14. 비상상황 대비 긴급 구조훈련 및 교육 후 평가결과 공유, 문제점 개선 등을 통한 훈련의 실효성 상승 방안을 위한 체계 필요 15. 교육·훈련 시기 조정 및 전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 훈련실시 계획 수립 등 체계적 관리 필요

○ 안전수준

개선 필요사항
[작업장] 1. 물탱크실 접근 통로에 발판 설치 및 주차장 비상구 출구에 근로자 안전통로 확보 필요 2. 기계실, 전기실 등의 장소에 누락된 보호구 착용 표지 개선 필요 3. 지침에 보호구 교체주기 및 보유기준, 개인별 이력관리 방안 등을 보완한 관리체계 개선 방안 필요 4. 배전반 충전부 절연조치 및 접지 실시 필요 5 주차장 배전반 잠금장치가 설치 필요 6. 일일점검 일지 작성 개선 필요 7. 지하 휴게실 등에 설치된 수신기는 직원이 상주하는 공간에 설치 필요 8. 위험물 보관소 내에 비치된 호흡용 보호구의 위치 개선 필요 9. 가스농도측정기 등 측정 장비에 대해 위급 시 활용 가능하도록 사용 방법 교육 및 장비의 적정상태 유지를 위한 지속적 관리 필요 10. 본부 및 지역본부 조직에 부합하고, 허가대상 작업별 안전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하는 등 안전작업허가제도 지침 개선 필요 11. 작업허가 신청에 따른 확인과 승인 주체 구분, 작업감시자 및 작업시간 기록, 특별안전보건교육 이수 여부 확인 등 작업허가제도 운영상의 미비점 개선 필요 12. 안전매뉴얼에 직원들이 사고사례를 반영하고 검사관 직무교육 등의 안전교육 과정에 포함 13. 도급사업 계획 단계에서 해당 도급의 위험성 및 안전대책을 검토하는 절차에 대해 개선 필요 14. 지속 계약을 유지하는 수급업체의 안전관리 능력 평가를 위한 안전보건수준 재평가가 실시 등을 지침에 반영하는 등 개선 필요 15. 일반 점검 및 검사 작업에 대한 작업 전 위험성평가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안전조치 방안 등에 대한 관리 개선 필요

○ 안전성과

개선 필요사항
1. 이행 완료한 과제에 대한 이행성과 모니터링 노력 필요 2. 차년도 기관 전략방향과 전략과제 연계를 통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 필요 3. 기관장 및 임원의 안전활동 성과지표가 구체화 등 성과 측정계획의 체계적 수립 필요 4. 안전문화 확산 기본계획 수립 연간 추진 예정 안전문화 프로그램 포함 등의 개선 필요

1 「안전역량」 범주 심사

1. 체계역량

2. 관리역량

1. 체계역량

【1】 안전보건경영 리더십

핵심가치

최고경영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두어야 하며,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전 임직원이 인지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아울러, 안전보건경영방침은 기관의 사업특성과 제반 안전보건 여건을 반영하여야 하며, 전 임직원과 종사자 등에게 공유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하 '기관')은 전파의 효율적 관리 및 방송·통신·전파의 진흥을 위한 사업 및 정부로부터 위탁 받은 업무(무선국 검사, 전자파 강도측정 등 정부위탁 업무,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운용 및 기금 사업관리, 방송프로그램 지원 등)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최고경영자(이하 기관장)는 '국민과 임직원 모두가 안전한 Safety KCA 구현' 버전과 '안전중심 경영으로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無재해 지속 유지'를 목표로 12개 추진과제를 수립하여 수행하였다. 추진전략의 내실을 강화하기 위해 내·외부 환경 분석을 위한 SWOT 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약점(weakness) 사항으로 언급되었던 전담인력 강화에 대해서는 '22년 11월 안전전담 조직을 기관장 직속으로 상향('21년도 부원장 직속)하는 등 안전보건 체계를 강화하였다.

기관장은 안전보건방침에 대해 직접 선포식을 개최하고 그룹웨어 게시판(안전보건관리) 등을 통하여 게시하여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또한, 안전보건경영 활동 일환으로 아차사고 발굴, 내부 안전보건 제안제도를 실시하였고 지역본부 주요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현업 업무부서(부산본부)의 안전보건활동 사례발표를 주재하는 등 안전보건경영을 실천하는데 노력하였으며, 수급업체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활동 개선을 위해 주기적으로 간담회 및 안전보건 관련 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

【개선 필요사항 요약】

1. 안전전담인력에 대한 전문성을 유지·강화할 수 있도록 기관장의 지속적인 관심 필요

【2】 안전보건경영체제 구축 및 역량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기관 규모와 사업의 종류에 적합한 안전관리체제를(안전관리조직 구성, 안전관리 업무 총괄 권한 부여 등) 구축하고, 안전관리조직 구성원의 전문성 향상, 동기부여 등 안전관리조직 운영 내실화에 힘써야 한다. 또한, 안전근로협의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등을 법정 기준 이상으로 운영하여야 하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기관은 안전경영지원단에 안전보건팀이 소속되어 있으며, 기관의 안전보건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22년 12월에 기관장 직속으로 개편하여 운영하고자 하였다. 안전경영지원단이 기관장 직속 조직으로 격상되었으나, 안전보건팀의 권한이 기관 전체 사업의 안전보건을 총괄관리 할 수 있는 조직으로 운영되기 위해 안전보건팀을 기관장 직속으로 하길 바란다.

기관은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선임의무는 없으나, 본원에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각 1명씩 선임하여 전체적인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안전보건조직의 역량강화를 위해 관련 자격 취득을 위한 예산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정책세미나 교육, 안전보건담당자 외부 전문가 교육 등 역량강화 교육을 이수하고 있으며, 기계설비유지 관리자 선임수당 지원, 안전보건팀 근무자에 대한 인사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기관은 '22년 안전경영위원회를 2회 운영하였으며, 안전근로협의체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도 4회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보건위원회 등을 통해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고, 사내 게시판을 통해 공지하고 있다. 또한, '21년 KOSHA-MS 인증 및 '22년 사후심사를 진행하였으나, 내부심사 결과에 따른 관찰 및 권고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수정 및 보완하길 바란다.

【개선 필요사항 요약】

1. 안전보건팀을 기관장 직속으로 개편 필요
2. KOSHA-MS 사후심사 결과에 따른 관찰 및 권고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 및 수정·보완 필요

【3】 안전보건경영 투자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안전목표 달성을 위해서 충분한 안전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하고 적기에 집행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22년 안전예산은 전년 대비 3억 8천 7백만 원 감액된 65억 5천만 원으로 편성되었다. 전년 대비 사업별 예산을 살펴보면 '시설물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각종 대책사업비'가 2억 3백만 원으로 78.0%, '안전사업비 및 안전관리비'가 1억 2천 3백만 원으로 94.6%, '안전관련 물품 및 장비 구입비'가 54.8%로 편성되었다.

예산 편성 시 지역본부에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참고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다. 매년 2회(상반기, 하반기) 안전예산 집행실적을 관리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예산관리 점검 결과보고'를 실시하고는 있으나, 안전경영 및 안전시스템 등의 경우 예산을 증액함에 있어 별다른 사유가 없었고, '22년 11월 현재 안전보건 예산은 편성 대비 66.2%로 저조하게 집행된 것으로 보아 부진사업에 대한 별도 계획 및 추가방안을 수립하는 등 안전보건예산 집행 관리에 관한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여 확대 운영하기를 바란다.

【개선 필요사항 요약】

1. 안전보건 예산의 부진사업에 대한 계획 및 추가방안 수립 등 모니터링 체계 마련 및 운영 필요

【4】 안전관리규정 및 절차·지침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안전관련 법령*의 요구사항과 기관의 위험요인 및 작업 특성을 반영하여 안전관리 규정 및 하위 절차서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규정 및 절차서·지침 등의 관리를 위한 제·개정 절차 등을 수립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등

심사의견

기관의 안전보건관리세칙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및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3조에 따라 기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재해 및 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며, 시설물, 건설공사 안전관리는 물론 기관의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기관은 '21년 4월 안전보건관리세칙을 제정하고 '22년 12월 1차 개정하였으며 안전보건관리세칙의 작성·변경 시에는 세칙 76조(변경절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최신화 하였다. 안전보건관리세칙의 개정 절차를 보면 개정 추진계획, 개정안 검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결과보고, 개정 및 개정알림의 절차로 충실히 이행하였고 개정 내용을 근로자들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전산 그룹웨어 게시판 및 정보공유란에 게시하여 알리고 있다.

안전보건관리세칙은 총칙,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직무, 안전보건교육, 작업장 안전관리, 작업장 보건관리,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위험성평가, 기타로 총 8장 78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전경영위원회 및 안전근로협의체, 작업중지제 운영, 조직의 직무 및 책임에 관한 사항 등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과 공공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기관 특성에 적합하게 반영하려는 노력이 보인다. 또한, 전년도 수준평가 시 미흡한 사항이었던 건설발주공사 현장 안전보건관리, 작업지휘자 및 감시자 배치, 안전보건교육의 계획수립, 작업환경측정, 문서보존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개정된 세칙에 반영하고 그 세부 내용은 하위 절차나 지침에서 다루고 있는 등 내실화를 추구하였다.

다만, 안전보건관리세칙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3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세부내용'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교육 기록에 관한 사항, 근로자 안전수칙

준수에 관한 사항, 작업환경측정 조치절차에 관한 사항과 ‘공공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서 요구하는 안전경영책임보고서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반영하여야 한다. 특히, 안전보건교육 기록, 근로자 안전수칙 준수, 작업환경측정 조치절차에 대한 사항은 전년도 수준평가 시에도 제시된 사항임을 인식하여 그 중요성을 내부 구성원과 공유하고 세칙을 정비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사항을 유지·증진할 필요가 있으며, 세칙의 하위 규범을 마련할 경우에는 이를 알리는 조문을 두어 연계성이 높아지도록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

기관은 안전보건관리세칙의 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21년 6월에 제정하였고, 같은 해 11월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 MS) 인증을 통해 1종 매뉴얼, 16종의 절차서, 31종의 지침서를 구축하여 안전보건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전년도 수준평가 시 미흡한 사항이었던 미세먼지·폭염·한파 등 기상이변 발생 시 작업중지 기준,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및 사후조치 기준 등 2건에 대해서는 지침에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고, 최근에는 안전보건관계자 역할과 활동, 비일상적인 작업 재해예방활동, 안전신고제안포상제도 운영 등 9종의 지침서를 제정하였고 적격수급업체 선정,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안전작업허가제도 등 8종의 지침서를 개정하는 등 운영의 노력이 보인다.

다만, 절차나 지침 등은 기관이 수행하는 모든 사업형태(사무 포함), 보유·운영 시설, 도급사업 종류 및 작업특성에 따라 안전작업 절차, 안전수칙 등을 포함하고 준수할 수 있어야 하며, 안전작업 절차나 안전수칙 등에는 작업장 출입 전 필수 안전조치 사항 점검 및 미준수 시 퇴거조치 이행 기준, 휴일 또는 야간 등 취약시간대 작업 기준 등의 내용이 반영 및 확대되어야한다.

안전 관련법 및 환경 변화에 따른 최신화 사항은 법규 및 준수평가 절차서를 토대로 연 2회 검토하였고, 특히, 하반기 검토기간에는 외부전문가를 통한 산업안전보건법, 전기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하여 최신화 하는 노력이 보인다. 다만, 상주 수급업체 등 현장 근로자 안전보건이행을 위해서는 세칙, 지침, 법규 등의 안전보건 관련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나 실행부서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개선 필요사항 요약】

1. 안전보건관리세칙에 안전보건교육 기록에 관한 사항 등 관련법령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추가로 반영 필요
2. 절차나 지침 등에 모든 사업형태(사무 포함), 시설, 작업특성에 따른 안전작업 절차 및 수칙 등을 포함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작업 절차 및 수칙 등에 작업장 출입 전 안전조치 점검 등의 내용 반영 및 확대 필요
3. 수급업체 및 현장 근로자 안전보건이행을 위한 세칙, 지침, 법규 등의 안전보건 관련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해당 근로자나 실행부서를 대상으로 교육 실시 필요

【5】 안전관리 목표 및 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조직·업무 특성, 사고통계현황 등을 반영하여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목표 및 전략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기관은 '안전중심 경영으로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無재해 지속 유지'를 목표로 12개 추진과제를 추진하였다. 이를 위하여 안전관리 전담조직 강화, 안전활동 수준평가 및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사후관리 등 세부추진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해당 체계에는 전년도 안전경영활동 이행 과제에서 도출된 사항들(안전보건경영체계 내실화, 근로자의 안전문화 참여 확대, 시설물 안전 강화 등)이 반영 되었다. 기관장은 기관의 안전관리체계 확립 및 안전보건실행력 중심의 안전보건경영체계 강화를 위해 안전전담 조직을 기관장 직속(당시 부원장 직속)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다만, 안전보건예산의 집행 관리를 위해 연 2회 '안전보건 예산관리 점검'을 실시하였으나 점검 결과에 대해 미진한 사업 혹은 지연 사업에 대한 추적관리 체계가 보완된다면 다음년도 예산 계획 수립 시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개선 필요사항 요약】

1. 안전보건예산의 점검 결과 미진한 사업 혹은 지연 사업에 대한 추적관리 체계가 보완 필요

2. 관리역량

【1】 위험성평가 실시 체계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안전조치 의무가 있는 직영·도급 사업 및 사업장에 대해 위험성평가 및 이행점검 실시를 위한 절차를 수립하고 적정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위험성평가 실시 절차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정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안전보건활동에 활용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기관은 안전보건관리세칙 제7장 67조(위험성평가계획 수립)에 위험성평가를 명시하고 있고 그 세부 절차는 절차서 및 지침서에서 따로 정하고 있다. 위험성평가 지침을 통하여 평가의 목적과 방법, 책임자의 역할, 실시 시기 및 절차 주지 방법 등의 내용 포함하였고 수행하는 작업, 설비, 공정에 대한 위험성평가 목적, 방법 등을 명시하고 업무 내용을 구분하여 위험성평가를 추진한 것으로 평가된다.

기관은 위험성평가를 위해 '22년 KCA 위험성평가 사전준비 교육을 진행하고 위험성평가 사전준비(1단계), 위험성평가 유해위험요인 파악(2단계), 위험성평가 위험성 추정 및 결정(3, 4단계), 위험성평가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5단계) 단계로 추진되며, 8등급 이상의 위험도에 대해서는 허용이 가능한 수준으로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하고, '22년 하반기에 본원의 정기 위험성평가를 추진하여 분야별 위험요인 발굴, 외부전문가 컨설팅, 개선조치 시행을 하였다.

수급업체의 위험성평가 이행점검 실행 근거 확보와 관련하여 안전보건경영절차의 안전보건 위험성평가 9. '도급사업에 대한 위험성 평가'에서 이행점검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기관은 직접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였고, 본원 직원이 참여해서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행하였으며, 위험성평가 결과는 사내 게시판과 안전보건교육을 통해 환류하고 있었다.

위험성평가에 따른 안전보건 활동으로 안전경영지침서에 비일상적인 작업 재해예방활동, 아차사고 잠재위험 관리지침을 제정하고,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에 위험성평가의 내용을 추가하여 위험성평가 환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개선 필요사항 요약】

1. 기관뿐만 아니라 수급업체의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해당사항이 안전교육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 필요

【2】 근로자 건강 유지·증진 활동 체계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근로자의 건강 유지·증진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과 더불어 자율적인 건강증진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고객응대 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실시하고 감염병(COVID-19 포함)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인프라 및 예방 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사업장의 보건관리를 위해서는 건강장해 발생요인에 대한 사전조사, 원인분석, 개선계획 수립, 개선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며,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활동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효과적인 보건활동을 위해서는 기관에서 실시한 보건관리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활동의 지속여부나 보완점을 발굴하고 다음년도 계획에 적용하는 환류활동이 필요하다.

기관은 직업병, 작업관련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안전보건경영지침서에 작업환경측정, 건강진단 등 보건관리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검진 대상여부를 판단하였다. 그 결과, 특수건강검진 대상으로 야간작업에 해당하는 경비직을 관리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일반건강검진과 관련하여서는 사무직과 비사무직을 구분하여 일반건강검진 주기를 설정하고 있었으며, 검진 결과 C, D 판정자를 사후관리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기관은 작업관련성 질환 관리대상도 선정하여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 직무스트레스 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관리대상 위험군을 분류하였다.

이러한 사전조사를 통해 기관은 안전보건활동 목표 및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고, 계획에는 보건 활동별 세부 목표와 일정, 책임자 지정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각의 보건활동 실시 전, 상황에 맞는 세부 계획을 수립·시행하였다. 기관은 계획에 따라 일반건강검진 후 C, D 판정자에 대한 건강상담을 실시하여 상담일지를 기록 보관하고 있으며, 특수건강검진은 관리대상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검진대상자(야간작업자)에게 일상 건강상담을 실시하여 질환 발생 예방에 노력하고 있는 점을 확인하였다.

기관은 소속 근로자의 근골격계질환, 뇌심혈관계질환, 직무스트레스를 예방하기 위한 건강증진활동도 추진하였다. 먼저,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해 전 직원을 대

상으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통증 호소자 및 관리대상자에게 근골격계질환 예방 교육 및 예방 용품을 배포하였다. 뇌심혈관계 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발병위험도 평가를 보건관리자가 신청자에 한해 자체 평가를 실시하였고, 고·중·저위험군에 대한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을 실시하였다. 야간근로자인 경비직에 대해서는 필수로 발병위험도 평가와 개인 상담을 실시하여 관련질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 외에도 기관은 임직원의 건강검진 결과를 분석하여 '음주'와 관련된 활동이 필요한 것을 파악하고, 건강증진센터를 활용한 건강측정·건강유지·건강확보·건강증진도모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소속 근로자에게 다양한 보건관리활동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보건관리활동에 소속근로자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여러 노력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기관은 보건관리활동이 실시될 때마다 '계획 → 실시 → 성과분석'의 단계를 거치고 있으나, '문제점 도출·개선 → 환류'의 단계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각 활동의 성과분석이 일회성인 점도 기관에서 개선하여야 할 부분이다. 보건관리활동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활동의 유지여부, 개선사항 등을 검토하고 차후에 반영되어 보건관리활동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길 바란다. 기관에서 일부 활동 후 실시하고 있는 근로자의 설문조사도 단순 이행이 아닌, 결과·분석을 통해 보건관리 활동에 반영하는 것도 검토하고, 기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참여가 저조한 근원적인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운영하길 바란다.

【개선 필요사항 요약】

1. 보건관리활동 시 일부단계(문제점 도출·개선 → 환류)가 미흡하여 해당 부분에 대한 개선 필요
2. 근로자의 참여가 저조한 근원적인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내부적 검토 및 개선 필요

【3】 안전보건교육·안전인식·활동참여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안전 지식 습득 및 실천을 통한 안전보건 인식수준 향상을 위하여 안전보건교육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소속 직원 및 작업장 근로자가 안전을 위한 개선과제를 제시할 수 있도록 신고·제안·포상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기관은 안전보건경영절차와 안전보건관리세칙 제3장 안전보건교육에서 목적, 역량, 적격성 기준 등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22년 안전보건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 대상자별 교육 종류, 미 이수자에 대한 보완교육, 강사선정 기준 등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다만, '22년도 교육계획에 수립된 문제점 파악 및 개선점에 대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다. 교육운영에 대한 성과분석과 근로자의 교육에 대한 만족도 조사, 노동조합 의견수렴을 통한 문제점 분석이 '22년부터 시작되고 있어 다음년도 교육 계획에는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 더불어, 경영진 및 상임이사, 안전담당자 등 대상별 안전보건교육 계획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모든 구성원에게 실효성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길 바란다.

기관의 안전보건교육은 연간 안전보건교육계획에 따라 각 대상별 안전보건교육이 적정하게 이수되어 왔으며, 실시한 교육에 대한 결과서를 누락 없이 기록 관리하고 있다. 교육 강사에 대해서도 기준을 수립하고 자체적인 강사선정 절차에 따라 교육과정별로 전문성 있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확인된다. 또한, 경영진, 관리감독자 등 관리자들에 대한 역량 및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다만,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된 기관장에 대한 교육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지역본부의 현장작동성 평가 시, 일부 지역본부에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에 대한 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기관은 안전보건교육에 대해 적정한 계획을 수립하여 누락 없이 안전보건교육을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관리자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인식과 참여수준과 관련하여 면담을 진행하였다. 관리자는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 작업장 순회 등을 통해 직원과 경영진이 수시로 소통하고 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활동이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위험성평가의 정의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참여를 위해 힘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관의 근로자는 취급하고 있는 유해위험물질 및 기계·기구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위험성평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아차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힘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비상상황 발생 시 조치사항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있다. 다만, 일부 구성원들은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목표, 위험성평가 등 일부 활동에 대한 답변이 부족하였으며, 이는 안전보건활동에 전 근로자가 참여토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안전보건 신고·제안·포상제도와 관련하여 기관은 KCA 안전보건관리세칙 제8장(기타) 제72조(안전문화조성), 제74조(포상)에 포함시켜 명시하고 있다. 기관은 제안제도, 아차사고 신고제도, 익명 신고제도를 KCA 임직원 및 위탁수급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사내게시판 등 그룹웨어를 통해 접수를 받고 있다. 기관의 내부제안제도 및 아차사고 사례는 총 74건이 접수되었으며, 접수된 사례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조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접수된 사례에 대해서 연말 심사·포상을 실시하여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총 12명을 시상하였으며, 접수된 사례들을 전 임직원에게 공유하여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한 부분이 확인된다.

【개선 필요사항 요약】

1. 안전보건교육의 누락 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적정한 계획 수립 필요
2.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목표, 위험성평가 등 안전보건활동에 전 근로자가 참여토록 관리방안에 대한 개선 필요

【4】 재해조사 및 비상상황 대비·대응 능력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사고), 비상상황 등에 대비하기 위한 지침·매뉴얼·절차서 또는 계획 등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기관은 비상상황 대비·대응과 관련하여 풍수해(태풍, 대설), 지진, 화재, 붕괴 등 비상사태 종류별 시나리오가 포함된 매뉴얼을 보유하고 있다. 재난안전 매뉴얼(별책)에 소방훈련은 연 2회 이상 계획하고 있으며, 연 2회 이상 교육·훈련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전 직원들에게 CPR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응급 상황을 대비하도록 교육·훈련하고 있다. 피해 확산 차단을 위해 소화기구, 비상발전기, 비상방송설비, 가스누설경보기, 인명 구조장비 등의 시설과 응급조치를 위한 자동심장충격기 등의 장비는 월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시 발견한 문제점들을 바로 개선하여 상시 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다.

다만, 자체 실시한 비상상황 대비 긴급 구조훈련 및 교육 후 평가회의를 실시하였으나, 평가의 내용 및 개선에 대해 확인할 수 없어, 교육·훈련에 대한 평가결과를 공유하고 문제점에 대해 개선하여 훈련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기관은 교육·훈련 시기가 하반기에 집중된 점이 아쉬우며, 전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훈련실시 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계획하여, 주기적으로 비상상황 발생 시 개인별 임무 및 보고체계 등을 숙지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은 재해 대응 및 재발방지를 위한 체계와 관련하여 안전보건경영 지침서에 사고조사 및 대책 등을 마련하고 있다. 사고를 휴업 3일 이상/미만을 기준으로 결재선, 제출문서 등을 구분하고 있으며, 사고 즉시 보고하고, 사고속보, 게시판(그룹웨어), 재난안전문자발송으로 전달하며, 안전보건팀에 의해 재해조사를 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며,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일련의 과정을 규정해 두고 있다.

그러나, 재해발생 시 사고조사팀은 재해의 유형 및 심각도에 따라 안전관계자와 더불어 외부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재해발생 후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개선기한 및 이행여부 모니터링, 준수여부 모니터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역할 등에 대한 내용을 관련 지침서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개선 필요사항 요약】

1. 비상상황 대비 긴급 구조훈련 및 교육 후 평가결과 공유, 문제점 개선 등을 통한 훈련의 실효성 상승 방안을 위한 체계 필요
2. 교육·훈련 시기 조정 및 전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 훈련실시 계획 수립 등 체계적 관리 필요

2 「안전수준」 범주 심사

1. 작업장 안전관리

(산업안전보건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 작업장 안전관리

【1】 작업장 기본 안전보건관리 수준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근로자 및 이용국민이 공사현장, 사무실, 작업장 등을 안전하게 이용하거나 작업할 수 있도록 통로 확보 및 정리정돈, 출입문 및 비상구 유지·관리, 위험요소에 대한 경고,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안내 등 기본적인 안전관리활동을 실행하고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통로 및 비상구 확보, 정리정돈, 안전보건표지 부착·관리, 보호구 지급·관리 등 기관의 기본적인 안전보건관리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충청본부와 경북본부의 기계실, 전기실, 비상발전기실, 물탱크실, 승강기실, 옥상, 창고 등 기관이 지배·관리하는 장소 전반에 대하여 순회방식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근로자 면담을 실시하였다.

전기실 및 기계실에는 작업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안전통로가 구획되어 있으며 출입금지 구역으로 지정하여 허가받지 않은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위기상황 시 출입문 및 비상구 기능 유지상태가 전반적으로 양호하며, 옥상 최상부 접근을 위한 고정식 사다리 등의 설치 상태도 적정하였다. 기계실, 물탱크실 등 관리시설에는 작업형태에 적합한 조명을 설치하여 적정 조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경북본부의 경우 기계실, 발전기실, 각 층 복도에 휴대용 손전등을 비치하여 정전 등의 이상상황에도 대비하고 있다. 부품 및 자재 보관용 선반, 캐비닛 등의 정리정돈 상태가 양호하고, 창고 내에 보관하고 있는 각종 기자재 등의 관리 상태도 양호하다.

그러나, 지하 물탱크실 접근 통로의 배관에 근로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발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지하 전기실의 주차장으로 통하는 비상구 출구에는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등 안전통로 확보에 있어 미흡한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위험물 저장소와 같이 엄격하게 출입이 금지되어야 할 장소에는 출입금지표지가 누락되어 있고, 옥상 냉각탑의 고정식 사다리와 같이 허가받지 않은 사람의 접근 방지조치가 필수적인 곳에 잠금장치 등의 조치가 없는 점 등 고위험 지역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시스템 절차의 작동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기계실, 전기실, 위험물 저장소 등에는 금지, 경고, 안내표지 등을 부착하고 사무공간에도 감전 및 충돌 우려가 있는 곳에는 주의표지를 부착하고 있다. 또한 사용하는 각종 가스에 대한 MSDS는 최신화된 자료를 비치하고 근로자에 대해 적절하게 교육하고 있다. 다만, 화장실 배풍기실, 제어반 패널, 배전반 등에는 용도를 표시하지 않거나, 기계실, 전기실 등 보호구 착용이 필요한 장소에는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표지가 누락되고, 저압 배전반에는 고압전기 경고표지가 부착되어 있는 등 안전 표시의 표준화가 미흡한 점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

기관은 '개인보호구 지급·관리 지침'에 개인보호구의 지급 및 관리 기준, 착용기준, 의무 등을 제시하고 보호구 지급대장을 통하여 지급·관리하고 있다. 경북본부의 경우 기계실, 전기실에는 개인보호구함을 비치하고 보호구의 목록과 수량을 기재하여 관리하고 있다. 비상발전기실 입구에 귀덮개를 비치하고 있으며, 전기실에는 점검 작업 시 사용할 절연봉, 검전기, 시험기 등을 보호구와 함께 구비하고 있다.

다만, 지침에 보호구의 교체주기 및 보유기준, 개인별 이력관리 방안 등이 누락되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보호구에 대한 현황관리가 되지 않으며 개인별 지급 이력을 확인할 수 없는 문제점은 개선이 필요하다. 아울러 일부 보호구가 작업용 책상 위에 비치되거나, 방진마스크 등 외부 오염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는 보호구가 전용의 보호구함이 아닌 장소에 보관되고 있는 점도 개선이 요구된다.

【개선 필요사항 요약】

1. 물탱크실 접근 통로에 발판 설치 및 주차장 비상구 출구에 근로자 안전통로 확보 필요
2. 기계실, 전기실 등의 장소에 누락된 보호구 착용 표지 개선 필요
3. 지침에 보호구 교체주기 및 보유기준, 개인별 이력관리 방안 등을 보완한 관리체계 개선 방안 필요

【2】 기계·전기 설비 위험방지 및 추락예방 조치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전기)기계·기구·설비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정 위험예방조치를 실시하고,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안전관리대상 사업·시설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이용객의 추락 방지와 시설·설비 등의 붕괴·도괴 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기관은 안전보건경영지침서에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근거를 두고 있으며, 냉·온수기, 냉각수 펌프 등의 설비현황을 정리하였다. 관련법에 따라 전기설비, 물탱크 청소 등 법정검사를 주기에 맞춰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다. 다만 기계·기구·설비(전기 포함)에 대한 위험방지조치와 관련하여, 배전반은 충전부 절연조치 및 접지가 미실시 되어 있어 감전재해 등의 위험방지조치 개선이 요구된다. 또한, 주차장에 설치된 배전반의 경우 외부인의 출입이 잦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잠금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점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

정비·점검·청소 등 비정형 작업 시 안전보건경영지침서(작업장의 안전조치)에 기계설비 등을 수리·정비·청소·점검 작업 시 LOTO 조치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다만, 일부 현장에서는 해당 조치를 위한 잠금장치를 보유하지 않았으며, 근로자 면담결과 일부 근로자는 LOTO 조치에 대한 인지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어, 교육 및 주지 등을 통한 인지 개선의 노력이 요구된다.

기관은 추락 및 낙하·붕괴 위험장소의 위험방지조치와 관련하여 안전보건경영지침서(떨어짐·무너짐에 대한 방호조치)에서 규정하고 있다. 기관은 건물 내·외벽으로 점검대상을 지정하여 일일 점검일지를 작성하고 매주 작업장 순회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만, 일일점검 일지가 다소 형식적으로 작성되어 실제 확인사항과 개선사항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점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

【개선 필요사항 요약】
1. 배전반 충전부 절연조치 및 접지 실시 필요
2. 주차장 배전반 잠금장치가 설치 필요
3. 일일점검 일지 작성 개선 필요

【3】 화재 및 화학물질사고 예방활동 수준

핵심가치

인체에 유해하거나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공공기관은 위험물질에 의한 폭발·화재·누출 사고 예방과 근로자 중독·질식사고 예방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화재의 종류에 따른 안전조치 및 소화대책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소화기의 종류, 수량, 스프링클러 설치위치 등 소방시설의 현황을 정리하여 관리하고 있다. 기관은 매월 소방시설 점검을 받으며, 개선이 필요한 소화설비는 개선조치를 실시하고 있고 비상대피로를 부착하는 등 소화대책 및 안전조치가 적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지하 휴게실에 설치된 수신기는 직원이 상주하는 공간이 아닌 휴게실에 설치되어 있어, 긴급한 상황에 즉시 대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은 경유 등 인화성 액체는 별도의 위험물 보관소에 보관하고 있으며, 취급하는 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보유하고 내부에 적정한 소화기를 비치하고 있다. 해당 장소는 환기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취급하는 물질의 현황 및 착용해야 할 보호구 등의 표지를 부착하여 관리하고 있다. 다만, 여분의 호흡용 보호구가 위험물 보관소 내부에 비치되어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경북본부의 경우에는 지하 정화조실과 외부 정압기실은 환기가 불충분하고 폭발의 위험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 장소는 관련 법적기준 준수 등 관리와 폭발위험장소 적용여부 등의 검토를 권고한다.

질식 위험공간의 경우에는 밀폐공간작업 안전관리에 근거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현장 특성에 따라 밀폐공간작업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였다. 질식위험 장소의 출입금지조치가 적정하며 환기팬, 송기마스크, 가스농도측정기 등을 비치하여 관리하고 있다. 다만, 가스농도측정기 등 측정 장비의 경우에는 사용한 이력이 없어 위급 상황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 방법 등을 교육하고, 장비의 적정상태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개선 필요사항 요약】

1. 지하 휴게실 등에 설치된 수신기는 직원이 상주하는 공간에 설치 필요
2. 위험물 보관소 내에 비치된 호흡용 보호구의 위치 개선 필요
3. 가스농도측정기 등 측정 장비에 대해 위급 시 활용 가능하도록 사용 방법 교육 및 장비의 적정상태 유지를 위한 지속적 관리 필요

【4】 위험작업 및 상황 안전관리

핵심가치

기관은 고위험 작업 수행 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작업허가제도와 근로자가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직접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작업중지 요청제도를 시행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안전작업허가제도 운영지침서에 따라 안전작업허가대상 작업을 화기작업, 전기작업, 고소작업, 중량물 취급작업으로 정하고 있으며, 추가하여 밀폐공간작업에 대해서는 밀폐공간작업 안전관리 지침에 따라 작업허가서를 발급하고 있다. 안전작업허가 절차를 직영공사와 협력업체 공사로 구분하여 신청, 관리, 허가, 확인주체를 정하고 있으며, 허가 주체별 책임과 권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지침이 본부조직에 맞게 작성되어 있어 지역본부 조직과 일치하지 않으며 허가대상 작업별 안전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별도의 지침으로 관리하고 있는 밀폐공간작업도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으로 포함하여 관리토록 권고한다.

허가제도 운영상황을 확인한 결과, 물탱크 청소 및 오수조 청소 작업에 따른 밀폐공간작업에 대해 모두 작업허가서를 발급하였음이 확인된다. 작업시작 전 안전교육을 통하여 기관의 규정 및 준수사항, 안전한 작업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출입자 건강상태 문진표작성, 밀폐공간작업 출입자 명단 및 가스농도 측정 등 밀폐공간작업 안전관리 지침에 따른 작업허가 절차를 준수하고 있음 또한 확인된다. 다만, 충청본부의 경우 수급업체의 작업허가 신청에 따른 확인과 승인이 동일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작업감시자 기록, 작업완료시간 기록, 특별안전보건교육 이수 여부 확인이 누락되는 등 작업허가제도 운영상에 일부 미흡한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

작업중지 요청제도는 근로자가 유해하고 위험한 상황에 직면할 경우 스스로 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사고사망 예방활동에 있어 적극적이고 중요한 제도이다. 기관은 작업중지 요청제 지침에 대해 작업시작 전 안전교육을 통하여 동 제도를 알리고 있다.

다만, 작업을 중지하고 신고하는 부서, 제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실시주체 등

지침에서 적시하는 조직이 지사 조직과 상이한 점은 제도의 실행력에 있어서 개선점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작업허가 비대상 작업을 수행하는 단기·일회성 공사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부족한 부분도 개선하길 권고한다.

검사·시험 등의 외부 출장 업무 중의 사고예방조치와 관련하여 기관은 무선국 검사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검사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무선국검사 안전매뉴얼'을 작성하고 있다. 안전매뉴얼은 사고발생 시 조치요령, 안전실천교육에 관한 사항, 상황별 안전행동요령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있다. 안전매뉴얼에 대한 활용성 향상을 위해 포켓북 형태로 제작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신입직원에 배포하고 있으며, 매월 직무 공유 회의 및 지역본부 자체 안전교육 등을 통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다만, 전년도 공공기관 수준평가에서 권고한 바와 같이 안전매뉴얼은 직원들이 검사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다년간의 사고사례를 반영하고 검사관 직무교육 등의 안전교육 과정에 포함하여 체계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

【개선 필요사항 요약】

1. 본부 및 지역본부 조직에 부합하고, 허가대상 작업별 안전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하는 등 안전작업허가제도 지침 개선 필요
2. 작업허가 신청에 따른 확인과 승인 주체 구분, 작업감시자 및 작업시간 기록, 특별안전보건교육 이수 여부 확인 등 작업허가제도 운영상의 미비점 개선 필요
3. 안전매뉴얼에 직원들이 사고사례를 반영하고 검사관 직무교육 등의 안전교육 과정에 포함

【5】 수급업체 안전보건 관리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도급사업 시 수급업체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예방조치를 누락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수급업체(관계수급업체 포함)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급업체(관계수급업체 포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유지를 위해 인적·물적 지원, 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기관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내 적격 수급업체 선정지침서를 통하여 입찰공지 시 안전작업계획 및 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안전수준평가 기준 등을 제시하고 안전보건수준평가를 통해 적격 수급업체를 선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모든 계약은 본원의 재무회계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문서를 시행하여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 등에 대해 안전보건팀과 사전 협의 후 적격 수급업체 평가를 통하여 업체를 선정토록 하고 있다.

기관의 작업허가서 발급은 기관의 담당자가 입회하고, 작업허가 대상이 아닌 작업은 작업 전 회의를 통하여 작업내용을 파악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지침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 수급업체 현황 파악 및 관리 절차를 지침서에 추가토록 하고 향후 수급업체에 대한 계약현황, 작업현황 등에 대해서 계약부서, 안전주관부서, 시행부서에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도록 도급사업 운영시스템의 도입을 권고한다.

기관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내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지침서에 도급사업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나, 도급의 각 단계별 수행주체 및 안전보건관련 확인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최근에 개정된 지침서에는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합동안전보건점검,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정보의 제공, 수급업체 안전보건교육 지원 및 위생시설 제공 등의 내용은 포함되어 있으나, 안전보건 이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 추후 도급의 각 단계별 수행주체 및 안전보건관련 확인사항을 명확히 하고 합동점검, 순회점검, 교육 장소 및 자료 제공, 교육 이행확인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기관은 도급사업 입찰단계에서 수급업체가 안전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수급업체에 안전작업계획서 상 주요항목과 선정기준을 함께 제공할 필

요가 있다. 현장작동성 평가 시 경북 본부는 수조 청소 및 사옥 방역, 정화조 청소에 있어 입찰공지 시 안전작업계획서 및 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안전수준평가기준 등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업체와 사전회의를 통해 질의답변 방식으로 복수의 업체(용역별로 각각 2개소)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와 계약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충청본부는 수조 청소작업에 있어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는 작성하였으나 업체와 계약된 이후에 질의답변 방식으로 조사·작성한 것으로써 적격 수급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취지에는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도급사업 계획 단계에서 해당 도급의 위험성 및 안전대책을 검토하는 절차에 대해서 제고가 필요하다.

또한, 본원과 연간 계속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상주 수급업체의 안전관리 능력을 평가하는 안전보건수준 재평가가 실시되지 않았다. 도급사업의 적격 수급업체 재평가 및 환류에 대하여 지침에는 반영하고 있으나, 상주 수급업체에 대한 안전보건수준을 재평가하는 평가기준, 평가시기 및 방법 등 세부적인 내용도 지침에 포함하여 안전보건수준에 대한 이행 및 환류 활동을 전개하기를 바란다.

기관의 전사 도급사업 운영시스템은 구비되어 있지 않으나, 본원의 경우 상주 수급업체를 제외하면 실제 연간 작업이 10건 미만으로 안전관리자 및 공무 파트 담당자가 안전작업허가서 발급을 통하여 수급업체 현황 및 작업공정과 혼재작업을 파악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충청 및 경북본부의 경우에도 연간 작업이 거의 없고 담당자 1인이 관리하고 있어 작업공정과 혼재작업의 파악·관리가 가능하다. 또한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위험성평가 결과 확인, 감시인 배치를 통하여 발급된 안전작업허가서와 동일하게 작업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함으로써 수급업체 작업현황을 관리하고 있다.

다만,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이 아닌 일반 점검·검사에 있어서는 현장작동성 평가 시 위험성평가 결과 확인, 작업 시작 전 안전점검 등의 실적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작업 전 위험성평가 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파악이 미흡하고 관리적인 안전조치만 수행하여 설비 및 장비의 위험에 대한 조치가 확인되지 않는 점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

기관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지침서에 도급사업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본원의 상주 수급업체 및 연간 용역업체와 매월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및 합동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였고, 주 1회 작업장 순회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협의체 및 안전점검 개최 시 안전보건 개선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건의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그 취지와 계획을 수급업체에 문서로 통지하고 운영 및

점검 결과를 안내하는 등 이행활동의 환류가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내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지침서에 관리(발주)부서의 장은 수급업체에서 실시하는 해당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원의 경우 수급업체에 지하 1층 중앙감시반, 복지동 2층 회의실을 교육장소로 제공하여 사용토록 하고 있다.

본원 및 경북본부는 수급업체 근로자에게 작업을 시작하기 전 공사 소개, 지침 준수사항,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사항, 작업장 내 휴게시설, 작업중지요청 안내, 비상대피도 및 비상연락처, 밀폐공간작업 특별안전보건교육 등을 수급업체 근로자에게 직접 실시하였다. 충청본부는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가 확인되지 않았으나 수조 청소작업에 대해 수급업체 근로자에게 위험성평가 교육을 실시하였다.

다만, 교육을 실시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질식 위험장소 안전작업, 감정노동종사자 건강보호 가이드는 자료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공사 소개, 지침 준수사항, 비상대피도 및 비상연락망 등의 자료는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안전작업허가서 발급을 통한 특별안전보건교육 등의 확인에 있어서는 포괄적으로 교육여부 란에 체크표시만 하고 있어 어떠한 교육을 실시하였는지는 확인하지 않았고,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이 아닌 단발성 공사에 대해서는 기관의 출입과 관련된 안전매뉴얼 등의 자료를 제공한 실적이 없는 등 교육 실시 확인 및 환류에 있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본원(휴게실, 샤워실, 탈의실, 수면실) 및 경북본부(휴게실)에서는 관계수급인 및 직원이 공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위생시설을 마련하고 있고 수급업체에 작업시작 전 안전교육을 통하여 안내하고 있으나, 충청본부(휴게실)는 마련한 위생시설에 대해서 수급업체에 안내한 실적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위생시설은 남녀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고, 위생시설의 청결 및 정상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청소하여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다.

다만, 기계식 주차장 및 승강기 점검 등 기타 도급작업에 대해서는 위생시설을 알린 실적이 확인되지 않는 점은 개선이 필요하고, 기관의 직원들과 공유하여 사용하고 있어 그 활용 빈도가 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므로 수급업체 직원들을 위한 별도의 위생시설을 구비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환경여건을 마련하길 권하고 위생시설의 청결 및 정상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점검표를 활용한 관리활동을 추진하기를 제안한다.

본원 및 경북본부는 수조 및 정화조 청소작업, 맨홀 배수펌프 및 배관 설치작업 등 질식위험작업 시 자체 수립한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밀폐공간작업에 따른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작업 시 안전작업허가서를 토대로 위험성평가 결과 확인 및 작업시작 전 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보건조치의 적정성을 확인하였다.

다만, 충청본부는 수조 청소작업 시 작업시작 전에 일반안전교육을 실시한 실적 외에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등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안전작업허가서에 따라 위험성평가 결과 확인 및 작업시작 전 점검을 통하여 안전보건조치의 적정성을 확인하였으나, 작업감시자 및 작업완료시간 등 기록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수급업체의 안전보건 이행조치 확인 등이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검토하길 바란다.

【개선 필요사항 요약】

1. 도급사업 계획 단계에서 해당 도급의 위험성 및 안전대책을 검토하는 절차에 대해 개선 필요
2. 지속 계약을 유지하는 수급업체의 안전관리 능력 평가를 위한 안전보건수준 재평가가 실시 등을 지침에 반영하는 등 개선 필요
3. 일반 점검 및 검사 작업에 대한 작업 전 위험성평가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안전조치 방안 등에 대한 관리 개선 필요

3 「안전성과」 범주 심사

【1】 안전관리등급 심사결과 개선 필요사항 이행수준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전년도 안전관리등급 심사결과보고서에서 제시한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개선 완료 여부와 현장 적용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개선과제 이행 심사>

기관은 총 23건의 개선권고 과제 중 22건의 과제이행이 확인되었다. 개선이 완료되지 않은 1건의 과제는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

<개선과제 이행노력>

기관은 전년도 평가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 후, 지적 사항에 대한 이행계획 수립을 진행하였다. 안전보건팀 주관하에 전사 대책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이행계획 완성 후 2022년 9월 이를 산업안전보건회원회에 보고 및 확정하였다. 경영자 검토를 통해 이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 관리하였으며, 그 결과 총 23건의 개선 권고 사항 중 22건을 이행 완료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실행과제별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여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성과측정과 모니터링」 절차와 연계한 연간 목표 대비 실적관리 필요”하다는 지적 사항은 추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은 이행 완료한 과제라 할지라도 자체 점검을 통해 이행성과 지속적인 모니터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개선 필요사항 요약】

1. 이행 완료한 과제에 대한 이행성과 모니터링 노력 필요

【2】 안전경영책임 활동 및 성과(안전경영책임보고서)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안전경영책임계획 이행 상황에 대한 점검내용, 재해현황 및 다음 연도 주요 계획 등을 안전경영책임보고서로 작성하여 관리함으로써 주요 안전활동의 지속적인 이행과 발전을 통해 안전경영책임을 정착시켜야 한다.

심사의견

기관은 전파의 효율적 관리 및 방송·통신·전파의 진흥을 위한 사업 및 정부로부터 위탁 받은 업무(무선국 검사, 전자파 강도측정 등 정부위탁 업무,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운용 및 기금 사업관리, 방송프로그램 지원 등)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근로자의 안전 최우선 경영방침에 따라 중대재해 Zero를 목표로 CEO 안전보건방침 선포를 하였다. 3실 7본부 1단 10지방본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관장 직속의 안전경영지원단(안전업무 전담인력 5명)을 두고 있다. 근로자의 안전 최우선 경영방침에 따라 중대재해 Zero를 목표로 CEO 안전보건방침 선포를 하였으며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4년간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안전활동 추진 실적의 적정성>

기관은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무재해 유지의 경영목표를 실행하기 위하여 SWOT 분석을 통해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한 전략과제를 도출하였으며, 12개의 전략과제를 마련하였다. 다만, 전략과제의 경우 단기와 중장기 분류하면서 임직원 건강증진 프로그램 시행, 안전보건 교육·훈련 전문성 강화를 중장기 추진과제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해당 사항들은 매년 안전보건활동에 중요한 사항들로 중장기가 아닌 단기로 추진하면서 해당 성과에 대한 적절한 환류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필요시 차년도 기관의 전략방향과 전략과제와 연계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안전전담 조직을 기관장 직속으로 조정하면서 기관의 안전중심 경영체계를 강화하였으며 기관의 안전경영책임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본사 및 지방본부에 안전담당자를 지정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소를 발굴하고 제거하기 위하여 본사(지방본부)뿐만 아니라 수급업체(어린이집, 구내식당, 전산아웃소싱)까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356건 중 위험성이 높은 105건에 대해 개선완료조치 하였다. 추가적으로 외부 전문가와 안전보건팀이 함께 이행상태 점검을 실시하여 조치가 미흡한 사항에 대해 보완하고 분야별 유해·위험 요인 추가

발굴 및 개선조치를 실시한 사항은 의미 있다고 판단된다.

기관은 '21년 말에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을 인증받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추진활동을 실시하였다. 우선적으로 직제 개편을 통해 안전전담조직을 재정비하고 안전전담 인력의 전문성 및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였으며 추진성과에 대해서 기관장이 참석하는 반기별 안전경영위원회, 분기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안전경영 추진성과를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등 안전보건경영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기관은 안전활동 수준향상을 위해 '10대 개선과제'를 선정하고 중점관리를 추진하였다. 중대재해처벌법 등 변화하는 외부환경에 맞춰 안전보건관리 세칙 개정을 실시함에 있어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전문가를 함께 참여시켜 개정을 추진하였다. 안전전담조직 직제 개편(부기관장 직속→기관장 직속)을 통해 안전보건관리 추진체계를 강화하였으며 안전전담 인력에 대해 인센티브(역량평가 1% 가점 부여)를 제공함으로 안전보건 업무 수행에 대한 성과향상 및 연속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기관은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면서 근로자 건강검진에 대한 실행 수준에서 한 단계 나아가 개인정보 동의를 통해 개인별 맞춤형 관리 체계를 추진하면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노력을 하였다고 평가된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한 안전보건교육은 교육 대상자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내부강사뿐만 아니라 분야별 외부전문 강사(중처법, 안전, 보건, 재난 등)를 초빙하여 교육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였으며 교육실시 이후 성과(만족도, 인식도 등), 미이수자 관리 등 사후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경영자 보고를 실시하였다. 또한, 안전보건교육은 부서별 업적평가 지표로 관리하고 있다.

안전경영책임계획 점검결과 중대재해처벌법 안전관리 의무사항 11개에 대해 조치완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으로 내부 안전보건 제안제도(수급업체 포함)를 활성화하였으며 아차사고 발굴 공모전도 추가적으로 운영하였다. 우수제안에 대해 시상을 통해 직원 참여를 유도하고 이중 일부는 실무 업무에 적용(안전커버, 안전용품 개선 등)하는 노력을 하였다. 또한 기관뿐만 아니라 수급업체 안전능력 평가를 위하여 적격수급업체 선정 및 안전작업허가제, 작업중지요청제 등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체계를 강화하였다.

<임원 등의 안전활동 성과측정>

기관은 자체사옥 (본사, 빛마루방송지원단, 부산본부, 충청본부, 전남본부, 경북

본부, 전북본부, 제주본부)과 임대사옥 (서울본부, 북서울본부, 경인본부, 강원본부)에서 근무하는 총 12개 본부에 대해 전문가 평가와 현장점검을 통해 자체 안전활동수준 평가를 시행하였다. 이를 통해 각 본부의 작업장 유해 및 위험요인 발굴, 안전 작업허가제 등 개선 활동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기관장과 임원에 대한 안전활동 성과지표가 구체적이지 못하여 목표 또한 제시되어 있지 않다. 기관은 성과지표 도출, 목표수립, 연중 모니터링 및 성과측정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안전경영책임계획 점검결과 및 조치계획의 적정성>

해당없음

<심사대상 연도 외부평가기관의 최근 안전평가 결과>

기관은 외부평가기관인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한 '21년도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에서 절대등급은 C등급, 상대등급 D등급을 받았으며 개획재정부에서 실시한 '21년도 공공기관 안전등급 심사에서 4등급을 받았다. 또한 국가안전대진단평가결과 '우수'를 받았다.

<대국민 안전가치 실현 노력과 성과>

기관 특성에 맞게 최근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재난정보에 대해 차세대 방송망을 활용한 선진화된 재난안전 체계를 구축하여 재난경보 확산 및 방송자막 송출을 통한 재난정보 전달 체계를 강화하였다. 또한, 지상파 UHD 방송망 기반의 재난경보 서비스를 제주도 지역까지 확대(기존 수도권 및 광역시 등 12개소에 제공)하였으며 지자체별 자체 예경보 시스템 연동을 위한 표준안 및 스마트폰, IoT 기기 연동 플랫폼을 구축하여 재난대비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다고 평가된다.

<기타사항>

허가를 받은 무선국에 대해 기술기준 적합여부와 제반사항 이행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기 위하여 무선국 검사 작업장(SKTMT 서구괴정함명클리닉 빌딩)을 방문하였다. 해당 작업장에서 전파품질 검사 작업이 이뤄지며 주요 위험요소로는 특수고압 설비가 설치·운영됨에 따라 감전으로 인한 위험요소가 상존하고 있어, 작업 전 적절한 안전장비 착용(활선접근 경보기, 검전기 등) 후 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한 안전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개선 필요사항 요약】

1. 차년도 기관 전략방향과 전략과제 연계를 통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 필요
2. 기관장 및 임원의 안전활동 성과지표가 구체화 등 성과 측정계획의 체계적 수립 필요

【3】 안전문화 확산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가치가 기관의 안전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내·외부 전반에 걸쳐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체계적인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기관은 KCA 안전수준 진단 평가 설문 조사를 진행하여 안전문화 수준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안전보건관리세칙 제72조(안전문화조성)에 의거 '22년 KCA 안전문화 확산(국민안전 서비스 활동)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국민안전 서비스 제공(ICT 기관 특성 반영 국민안전 서비스 제공, 영세어민 대상 긴급조난신호[구조장치] 발사장치 개발, 기간통신망 두절 대비 자체 재난 통신망 구축 운영)과 감염병 예방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기관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사내게시판, 메일 활용으로 안전보건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내용으로는 안전수칙 준수 안내, 감염병 예방, 감염병 확산방지, 안전의 날 주간행사 시행, 건강증진센터 운영, 건강 유지 프로그램, 아차 사고 및 내부 제안제도 공모, 안전보건 우수사례 발표, 생활환경 전자파 측정시스템 대외홍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하게 운영되는 여러 프로그램은 기관의 안전문화 확산에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22년 안전문화 확산 기본계획 수립 시 연간 수행하였던 여러 안전문화 프로그램이 포함되지 않아서 아쉽다.

기관의 안전문화 정착 및 확산을 위한 활동 중 하나는 '지상파를 활용한 재난경보 서비스 도입'이다. 기관은 방송·통신·전파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재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UHD 방송망 활용하여 재난경보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전용 수신기를 보급·지원하고 있다. 또한, 재난경보 서비스의 구축 관리 및 유지보수 등과 관련하여 관련 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체계적 서비스 운영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다만, 재난 경보 서비스는 수신기를 통한 재난 알림 서비스로써, 대국민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안전활동 참여 유도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개선 필요사항 요약】

1. 안전문화 확산 기본계획 수립 연간 추진 예정 안전문화 프로그램 포함 등의 개선 필요

【4】 사고사망 감소 성과 및 노력도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안전활동을 통해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과 관련된 직영·수급업체·건설발주현장 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의 사고사망 예방 등 안전성과를 창출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사고사망 감소 성과>

기관은 2022년도 산업재해통계 승인 기준 사고사망자가 없었다.

<사고사망 감소 노력>

해당없음